

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

제정 1990. 10. 8 조례 제1203호
개정 1996. 3. 1 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1998. 7. 3 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1999. 7. 20 조례 제 222호
2005. 10. 5 조례 제 723호
2007. 10. 5 조례 제 89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합리화와 기술혁신 고품질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그리고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 및 단체, 개인을 선정하여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0. 5>

제2조(수상부문과 인원) ① 용인시 산업평화대상(이하 “산업평화대상”이라 한다)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0. 5>

1. 경영혁신 부문
2. 기술개발 부문
3. 근로협력 부문
4. 지역사회공헌 부문

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.

제3조(수상대상자)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(경영혁신 부문, 지역사회공헌 부문에 한함)하는 자로서 경영혁신 부문은 5년 이상, 기술개발 부문·근로협력 부문·지역사회공헌 부문은 3년 이상 관내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및 단체 개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5]

제4조(수상자 추천)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, 단체 및 기업체장과 구청장이 추천한자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

제5조(심사위원회) ①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수상자 결정) ①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사 결과 수상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시상) ① 산업평화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시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〈개정 2005. 10. 5, 2007. 10. 5〉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1998. 7. 3, 2005. 10. 5〉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9. 7. 20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5. 10. 5 조례 제723호〉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7. 10. 5 조례 제89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07. 10. 5>

상 패

용인시 산업평화대상 (문안)

○ ○ 부문 ○ ○ ○
위의 분(기업, 노동조합)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였으며, 특히
()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이는 우리 용인시의 영광이며
은 시민의 귀감이 되므로 제 ○ 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

경영혁신 부문 : 기업경영 합리화로 산업평화 정착
기술개발 부문 : 창의적인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
근로협력 부문 :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
지역사회공헌 부문 : 봉사활동으로 밝고 훈훈한 사회 조성